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1,268,603	28,238,058
일반회계	860,457,389	25,813,722
특별회계	80,811,214	2,424,336
공기업특별회계	70,890,304	2,126,709
상수도사업	37,870,306	1,136,109
하수도사업	33,019,998	990,600
기타특별회계	9,920,910	297,627
의료급여기금	2,624,922	78,7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05,800	6,174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44,298	7,3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6,651	4,400
수질개선관리	3,874,239	116,227
중소기업육성자금	2,825,000	84,7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10,251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